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3월 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3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7년 3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제안이유

- 노인의 복지증진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노인 복지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에서 건립하는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명칭을 각각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천시립 노인전문요양원으로 정하고, 시설 안에 부천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두며, 위치는 오정구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설립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노인복지시설별 업무 및 이용대상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정함.(안 제6조)
- 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거나, 주치의가 퇴원결정, 부양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부정입소 및 격리보호의 필요 등이 있는 경우에는 퇴소시키도록 함.(안 제7조)

- 마.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바.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사. 수탁자의 의무와 해지 규정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아.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을 위탁한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노인전문병원은 국·도비 지원을 받았나?	○ 받지 못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 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민간병원이 확충되면 포화상태가 예상되는데?	○ 시립 노인전문병원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시설로 운영될 계획임.
○ 요양병상이 부족한가?	○ 부족함.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임.
○ 민간병원과 시립병원의 차이점은?	○ 공공성임.
○ 수탁자 자격을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이상인 의료법인’으로 정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는가?	○ 수탁자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 시설별로 따로 위탁할 계획인가?	○ 단일법인에 함께 위탁할 계획임.
○ 제명과 내용 일부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 복합시설이다 보니 그런 측면도 있으나, 시행규칙으로 보완하겠음.
○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의견은 접수되었는가?	○ 없었음.
○ 시가 신경써야 할 시설은 전문병원이고 아니고 요양원이나 재가시설이라고 보는데?	○ 전문병원도 꼭 필요한 시설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3
의결 연월일	2007. 3. 22

제안년월일 : 2007. 3. 20.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수탁자 자격을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비영리 법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안 제9조 제1항 1호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정함.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 제1항 제1호중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이상인 의료법인”을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이상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며, 제2호중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를 “사회복지법인으로”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과 동일함.』

신·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9조(위탁운영) ① (생략)</p> <p>1.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이상인 <u>의료법인</u></p> <p>2. <u>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u>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9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1. ----- --<u>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u></p> <p>2. <u>사회복지법인으로</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수정안 포함]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4조·제35조·제38조 및 제39조,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
2.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조(명칭 및 위치) 노인전문병원의 명칭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은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하 “노인전문요양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부천시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재가지원센터”라 한다)를 두며, 위치는 오정구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둔다.

제4조(업무)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노인전문병원
 - 가. 치매·중풍환자의 외래 및 입원치료
 - 나. 치매·중풍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 다. 기타 노인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전문요양원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에 대하여 무료 또

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

3. 재가지원센터

가. 단기보호, 주간보호,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방문재활서비스

나. 요양관리지도, 복지용구대여, 요양서비스계획 작성·제공

다. 독거노인 복지서비스지원센터 업무 등

제5조(이용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
2. 65세 이상인 저소득 노인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 중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 환자
4. 65세 이상의 노인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자
5.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6. 기타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제6조(비용) ①노인전문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퇴소)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시킬 수 있다.

1.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퇴원을 결정한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4.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
5.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운영위원회)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2. 사회복지법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

②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기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수탁자는 시설·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위·수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수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 계리하여야 하며, 병원 운영으로 발생된 이익금의 일부를 시 세입으로 조치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